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| | | | |
|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선 | 기관외장 | | |
| 람 | | 제1982호 | 2026. 3. 9.(월) |

차 례

고 시

○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——— 1

공 고

○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85호 검단·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·공고 ——— 3

○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95호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·공고 ——— 6

○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2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——— 20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-60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3. 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고시내용: 부여 5건

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부여일 |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별 도 열 람 | |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seo.incheon.kr>)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6. 3. 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| 연번 | 구분 | 지번주소 | 도로명주소(부여) | 고시일자 | 도로명 고시일자 | 도로명 부여사유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
| 1 | 건물번호 부여 |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59-2 |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64 (왕길동) | 20260309 | 20081231 |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|
| 2 | 건물번호 부여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-38 |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78 (원창동) | 20260309 | 20090922 | 옛날 청라도가 파랑으로 불려,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|
| 3 | 건물번호 부여 |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-85 |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978 (가좌동) | 20260309 | 20090710 | 인천에서 육교를 지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|
| 4 | 건물번호 부여 |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0-3 |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8-20 (원당동) | 20260309 | 20081231 |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|
| 5 | 건물번호 부여 |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06 | 인천광역시 서구 두밀로 153-20 (대곡동) | 20260309 | 20130730 | 자연부락 명칭 반영 |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-585호

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·공고

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 개발법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「인천광역시 도시개발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 032-560-6872)에 갖추어 놓았으며,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3. 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 요

- 사 업 명: 검단·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
- 위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
- 면 적: 204,390㎡
- 사 업 비: 1,113억 원
- 시 행 자: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
- 사업기간: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환지처분일 까지
- 시행방식: 혼용방식

2. 개발계획 주요변경 내용

- 시행자에 관한 사항
 - 기정)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김왕표
 - 변경)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전해진
- 토지이용계획

| 구 분 | 당 초 | | 변 경 | | 증 감 | 비 고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면적 (㎡) | 구성비 (%) | 면적 (㎡) | 구성비 (%) | | | |
| 합 계 | 204,390 | 100.0 | 204,390 | 100.0 | | | |
| 산업시설용지 | 120,231 | 58.8 | 126,787 | 62.0 | 증) 6,556 | | |
| 기 반 시 설 용 지 | 소 계 | 75,412 | 36.9 | 75,300 | 36.9 | 감) 112 | |
| | 도 로 | 23,047 | 11.3 | 22,935 | 11.3 | 감) 112 | |
| | 주 차 장 | 5,623 | 2.8 | 5,623 | 2.8 | | |
| | 공 원 | 18,250 | 8.9 | 18,250 | 8.9 | | |
| | 녹 지 | 13,788 | 6.7 | 13,788 | 6.7 | | 대체서식지 생태공원포함 |
| | 하 천 | 2,937 | 1.4 | 2,937 | 1.4 | | |
| | 저 류 지 | 7,524 | 3.7 | 7,524 | 3.7 | | |
| | 폐수처리시설 | 3,381 | 1.7 | 3,381 | 1.7 | | |
| | 구 거 | 862 | 0.4 | 862 | 0.4 | | |
| 기타시설용지 | 8,747 | 4.3 | 2,303 | 1.1 | 감) 6,444 | 지원시설 | |

- 변경사유

| 연번 | 변경 내용 | 변경 사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| 기반시설면적 변경 (중2-2호선 폐지 등) | 검단일반산업단지 저류지를 관통하는 구역 외 도로와 관련하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부득이 구역 외 도로 개설이 어려움에 따라 구역 외 도로와 연계된 중2-2호선(B=15m) 폐지 및 구역 내 도로의 선형, 확폭을 통한 원활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|
| 2 | 기타시설용지 면적 변경 (지원시설) |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오류동 1019, 1020번지에 대하여 주변 개발여건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 사항 반영(지원시설용지 → 산업시설용지) |

◦ 구역 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

| 구 분 | | 규격 | 설치비용(천원)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정 | 중로 1-2호선 | B=20m, L=41m | 666,920 | 준공후 무상귀속 |
| | 중로 2-2호선 | B=15m, L=163m | 1,435,600 | 준공후 무상귀속 |
| |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부체도로 | B=4m, L=960m | |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후 결정 |
| | 계 | | 2,102,520 | |
| 변경 | 중로 1-2호선 | B=20m, L=41m | 551,506 | 준공후 무상귀속 |
| |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부체도로 | B=4m, L=960m | |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후 결정 |
| | 계 | | 551,506 | |

- 변경사유: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부득이
구역 외 도로 개설이 어려움
- 설치 및 비용부담주체: 사업시행자

3. 공람기간

- 공람기간: 2026. 3. 9. ~ 2026. 3. 26.
- 공람장소
 -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도시건축과 (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0번길
14, 3층 / ☎032-560-6872)
 - 사업시행자 사무실(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번안길 17, 3층(오류동))
- 관계도서: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

4. 공람기간

- 본 공람공고 내용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
드리며,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실
수 있습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-595호

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 ·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 · 공고합니다.

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3. 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: 2026. 3. 9. ~ 2026. 4. 10.
2. 공람 장소: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(서구 서곶로 323, 세민빌딩 3층)
3. 의견서 제출방법 (문의 ☎032-560-4934)
 - 가. 직접 제출: 공람 장소에 서면 제출
 - 나. 이메일 제출: minsoni@korea.kr(스캔본 제출)
4. 공람 내용 :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
5. 주요내용

가. 정비구역 지정 계획(안)

| 지정 구분 | 사업의 구분 | 구역의 명칭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
| 신설 | 재개발사업 |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|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| - | 증)78,792.4 | 78,792.4 | |

나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

①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| 지정 구분 | 구역의 명칭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
| 신설 | 신현초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|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| - | 증)78,792.4 | 78,792.4 | |

②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| 구 분 | | 면 적(㎡) | | | 구 성 비(%)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 |
| 계 | | 78,792.4 | - | 78,792.4 | 100.0 | |
| 주거지역 | 계 | 78,792.4 | - | 78,792.4 | 100.0 | |
| | 제1종일반주거지역 | 78,792.4 | 감)78,792.4 | - | - | |
| | 제2종일반주거지역 | - | 증)78,792.4 | 78,792.4 | 100.0 | |

-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| 도면표시 번호 | 위 치 | 용 도 지 역 | | 면적(㎡) | 변 경 사 유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|
| | | 기 정 | 변 경 | | | |
| - | 서구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| 제1종일반 주거지역 | 제2종일반 주거지역 | 78,792.4 | ·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·관리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| - |

다. 토지이용계획(안)

| 구분 | 면적(㎡) | 비율(%)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계 | 78,792.4 | 100.0 |
| 공동주택용지 | 59,449.2 | 70.4 |
| 정비기반시설 | 23,343.2 | 29.6 |
| 도로 | 1,379.6 | 1.7 |
| 주차장 | 11,549.6 | 14.7 |
| 공원 | 10,549.6 | 13.2 |

라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
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규모 | | | | 기능 | 연장(m) | 기점 | 종점 | 사용형태 | 주요경과지 | 최초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(m) | | | | | | | | |
| 기정 | 소로 | 1 | 7 | 10 | 국지도로 | 436 | 신현동 282 | 신현동 293-4 | 일반도로 | - | 경고 53 ('77.3.11) | |
| 변경 | 소로 | 1 | 7 | 10 | 국지도로 | 37 | 신현동 287-23 | 신현동 282-37 | 일반도로 | - | - | 선형변경 |
| 변경 | 소로 | 1 | A | 10 | 국지도로 | 153 | 신현동 292-21 | 신현동 293-4 | 일반도로 | - | - | |
| 기정 | 소로 | 2 | 29 | 8 | 국지도로 | 340 | 신현동 278-36 | 신현동 283-3 | 일반도로 | - | - | |
| 변경 | 소로 | 2 | 29 | 8 | 국지도로 | 56 | 신현동 283-12 | 신현동 283-3 | 일반도로 | - | - | |
| 기정 | 소로 | 2 | 30 | 8 | 국지도로 | 340 | 신현동 290 | 신현동 284-20 | 일반도로 | - | - | |
| 변경 | 소로 | 2 | 30 | 8 | 국지도로 | 340 | 신현동 290 | 신현동 284-20 | 일반도로 | - | - | 선형변경 |
| 기정 | 소로 | 3 | 17 | 6 | 국지도로 | 436 | 신현동 278 | 신현동 291 | 일반도로 | - | - | |
| 변경 | 소로 | 3 | 17 | 6 | 국지도로 | 190 | 신현동 287-32 | 신현동 291 | 일반도로 | - | - | |
| 폐지 | 소로 | 3 | 16 | 6 | 국지도로 | 218 | 신현동 280 | 신현동 279-5 | 일반도로 | - | - | 노선폐지 |
| 폐지 | 소로 | 3 | 19 | 6 | 국지도로 | 230 | 신현동 288-8 | 신현동 285-5 | 일반도로 | - | - | 노선폐지 |
| 기정 | 중로 | 1 | 27 | 15~20 [20] | 보조간선 | 4,565 | 광로 2-9 | 대로 2-29 | 일반도로 | - | '66.11 | |
| 변경 | 중로 | 1 | 27 | 15~23 (23) | 보조간선 | 4,565 | 광로 2-9 | 대로 2-29 | 일반도로 | - | " | 폭원확장 |

※ 1) () : 변화폭원, [] : 구역내 폭원

- 도로 변경 사유서

| 변경전도로명 | 변경후도로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로 1-7 | 소로 1-7 | 일부 도로 폐지 (B=10.0m, L=37.0m) |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일부 노선폐지 |
| - | 소로 1-A | 도로 변경 (B=10.0m, L=153.0m) | 소로 1-7 일부 노선폐지로 인한 도로 신설 |
| 소로 2-29 | 소로 2-29 | 일부 도로 폐지 (B=8.0m, L=56.0m) |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일부 노선폐지 |
| 소로 2-30 | 소로 2-30 | 도로 선형변경 (B=8.0m, L=340.0m) |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|
| 소로 3-17 | 소로 3-17 | 일부 도로 폐지 (B=6.0m, L=190.0m) |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일부 노선폐지 |
| 소로 3-16 | - | 도로 폐지 (B=6.0m, L=218.0m) |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|
| 소로 3-19 | - | 도로 폐지 (B=6.0m, L=230.0m) |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|
| 중로 1-27 | 중로 1-27 | 도로 확폭 (B=15~20m→15~23m, 증) 3m) |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해 도로 폭원 확장 |

②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치 | 면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 |
| 신설 | 1 | 신현 근린공원 | 근린공원 | 신현동 281-32번지 일원 | - | 증)10,413.9 | 10,413.9 | - | 조성 후 무상귀속 |

- 공원 변경 사유서

| 도면표 시번호 | 시설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신현 근린공원 | · 신설 - 면적: 증)10,413.9㎡ | · 「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」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(증 10,413.9㎡) |

③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 초 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 |
| 신설 | 2 | 노외주차장 | 신현동 286-20번지 일원 | - | 증)11,549.6 | 11,549.6 | - | 조성 후 무상귀속 |

- 주차장 변경 사유서

| 도면 표시 번호 | 시 설 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2 | 노외주차장 | · 신설 - 면적: 증)11,549.6㎡ | · 「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」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외주 차장 신설 (증 11,549.6㎡) |

마.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계획

| 구분 | 구역 구분 | | 가구 또는 획지 구분 | | 위치 | 주용도 | 건폐율 | 용적률 | | 높이 (m) (최고 층수)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| 명칭 | 면적 (㎡) | 명칭 | 면적 (㎡) | | | | 정비 계획 | 법적 상한 | | |
| 신설 |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| 78,792.4 | 획지1 | 55,449.2 | 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|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| 60% 이하 | 250% 이하 | 250% 이하 | 116m 이하 (40층 이하) | |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

- 공급계획 : 1,366세대
- 전체건립규모(전용면적 기준)

| 건립규모 | | 세대수 | 비율(%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합계 | | 1,366 | 100.0 | - |
| 85㎡ 이하 | 소계 | 1,366 | 100.0 | - |
| | 40㎡ 이하 | - | - | - |
| | 40~60㎡ 이하 | 620 | 45.4 | - |
| | 60~85㎡ 이하 | 746 | 54.6 | - |
| 85㎡ 초과 | | - | - | - |

-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% 이상을 85㎡ 이하로 건설

- 임대주택 건설계획(전용면적 기준)

| 건립규모 | | 세대수 | 비율(%)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합계 | | 1,342 | 100.0 | - |
| 임대 | 소계 | 70 | 5.2 | - |
| | 40㎡ 이하 | - | - | - |
| | 40~50㎡ 이하 | 70 | 5.2 | - |
| 일반분양 | | 1,448 | 94.8 | - |

- 임대주택 :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5~15%이하 (5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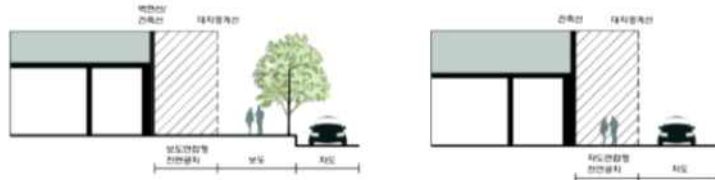
용적률 완화 사항

- 녹색건축물·에너지효율등급, 장수명주택 및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
- 공공시설등 설치·조성하여 부지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

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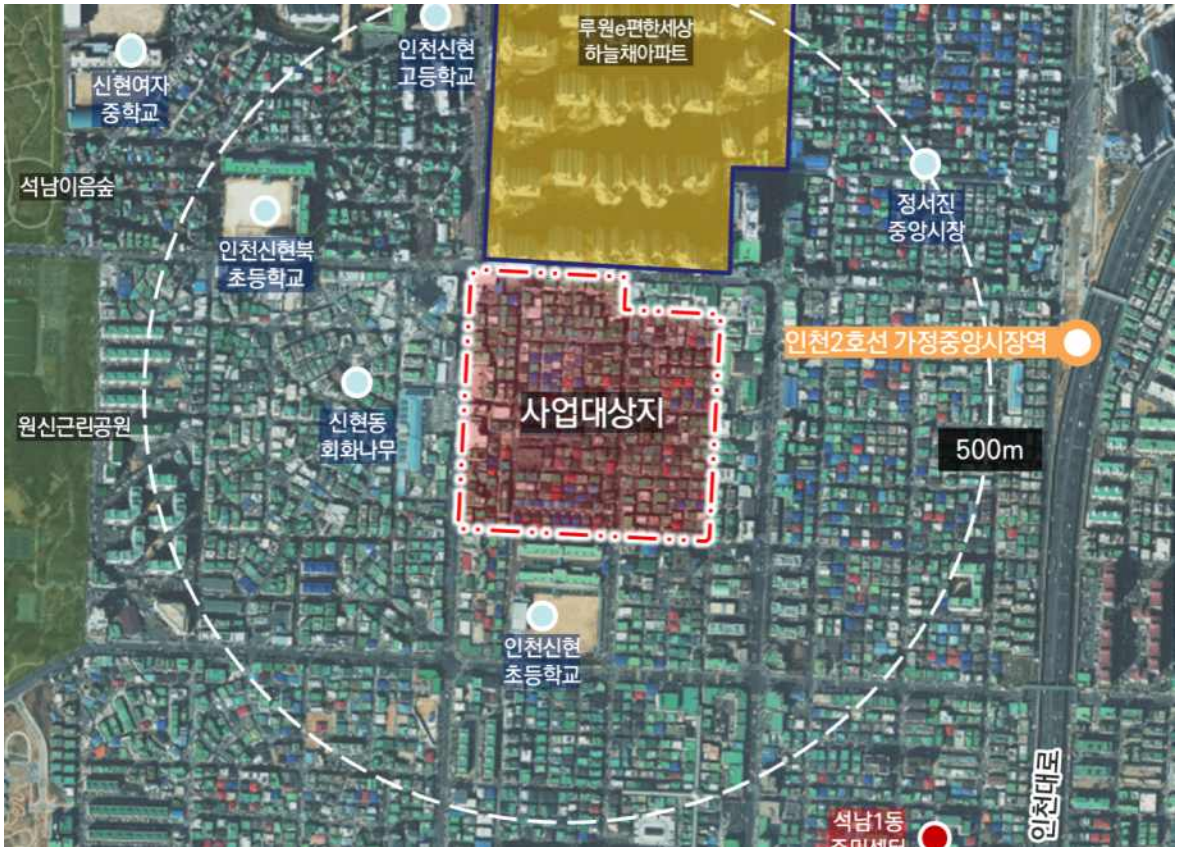
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부분 6m이격(대상지 북측, 서측)

<예시도>



- 남북연결 공공보행통로 경계부 건축한계선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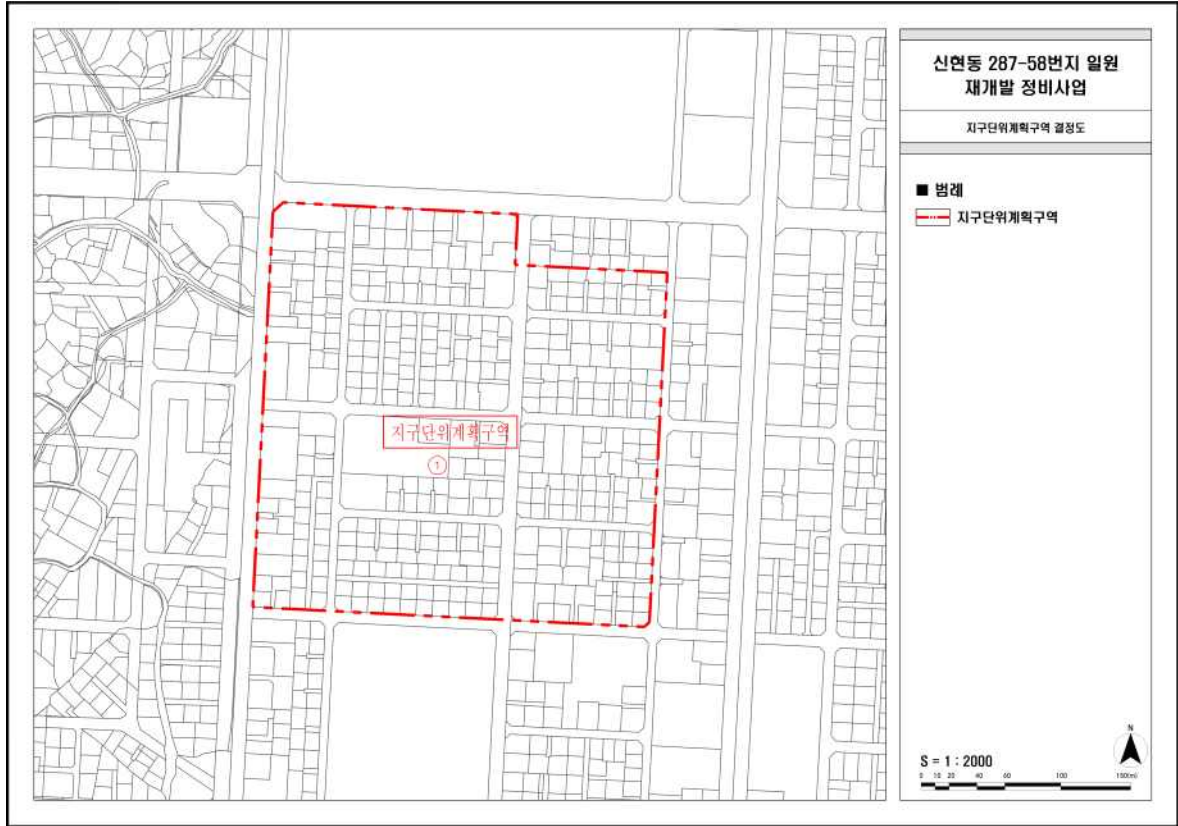
※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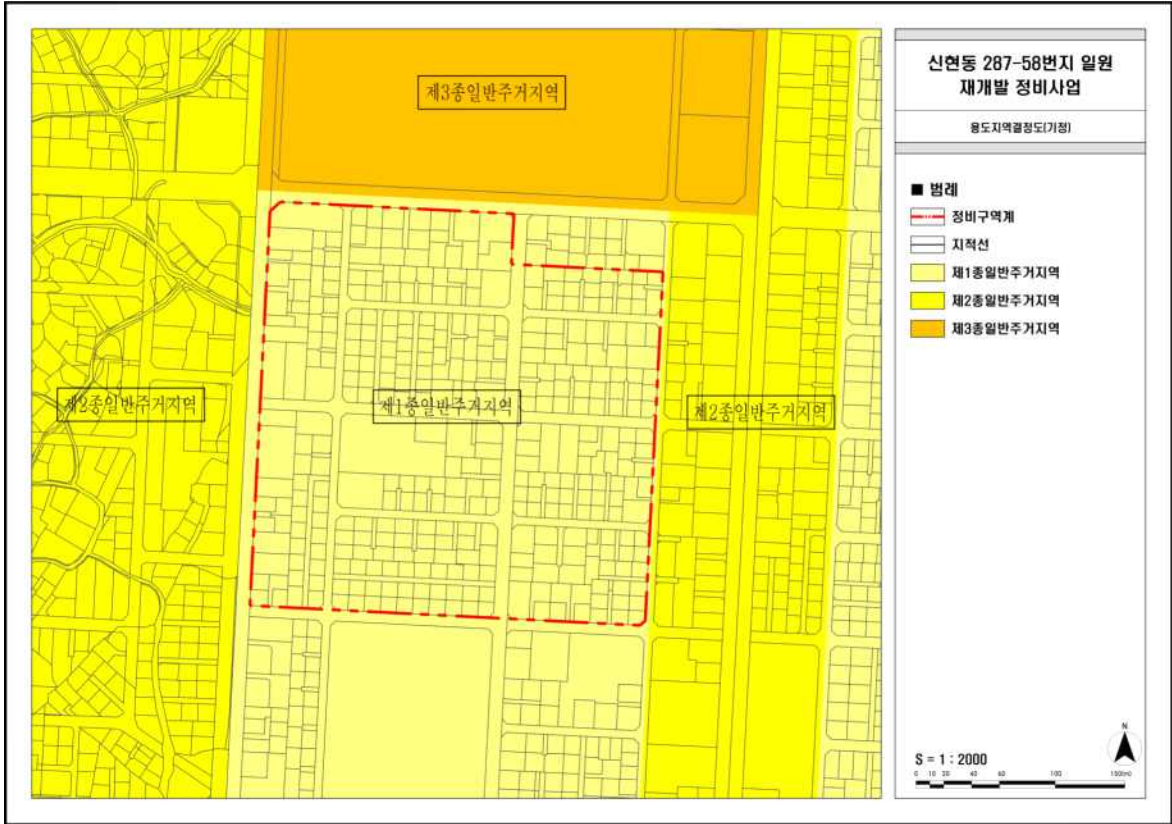
※ 정비구역 결정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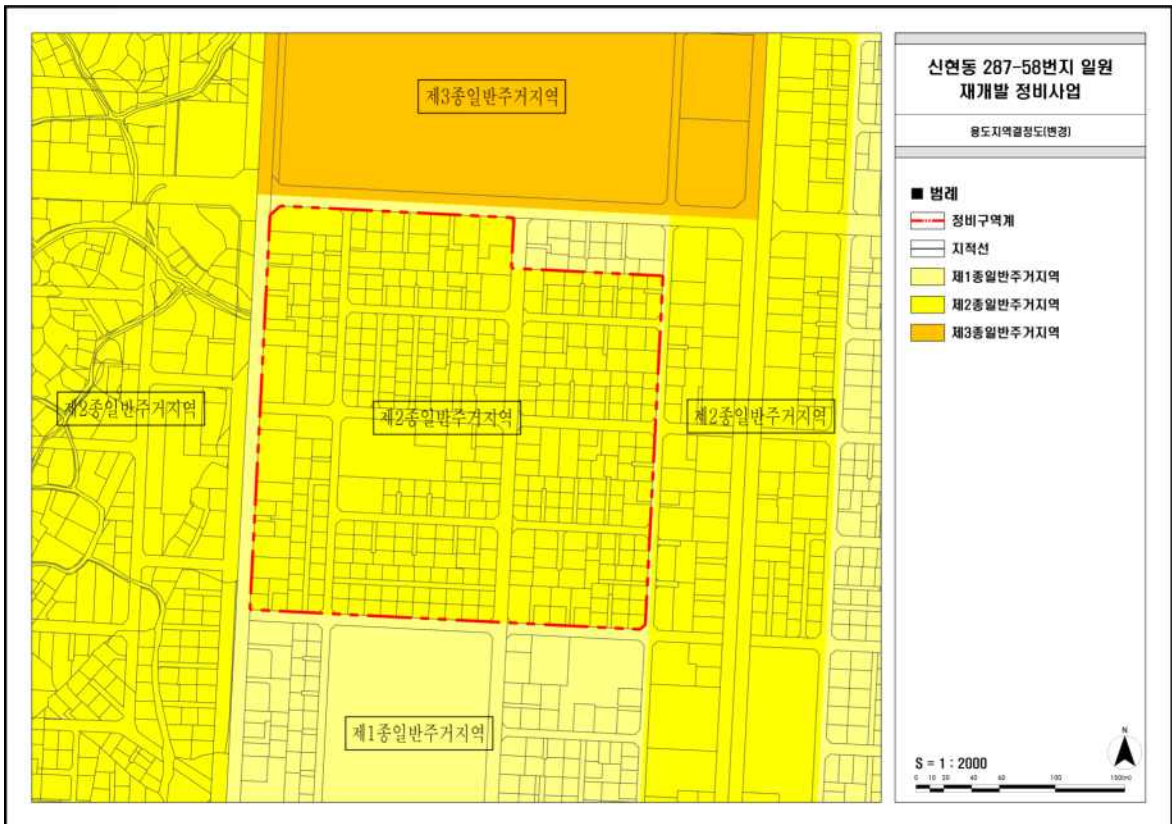
※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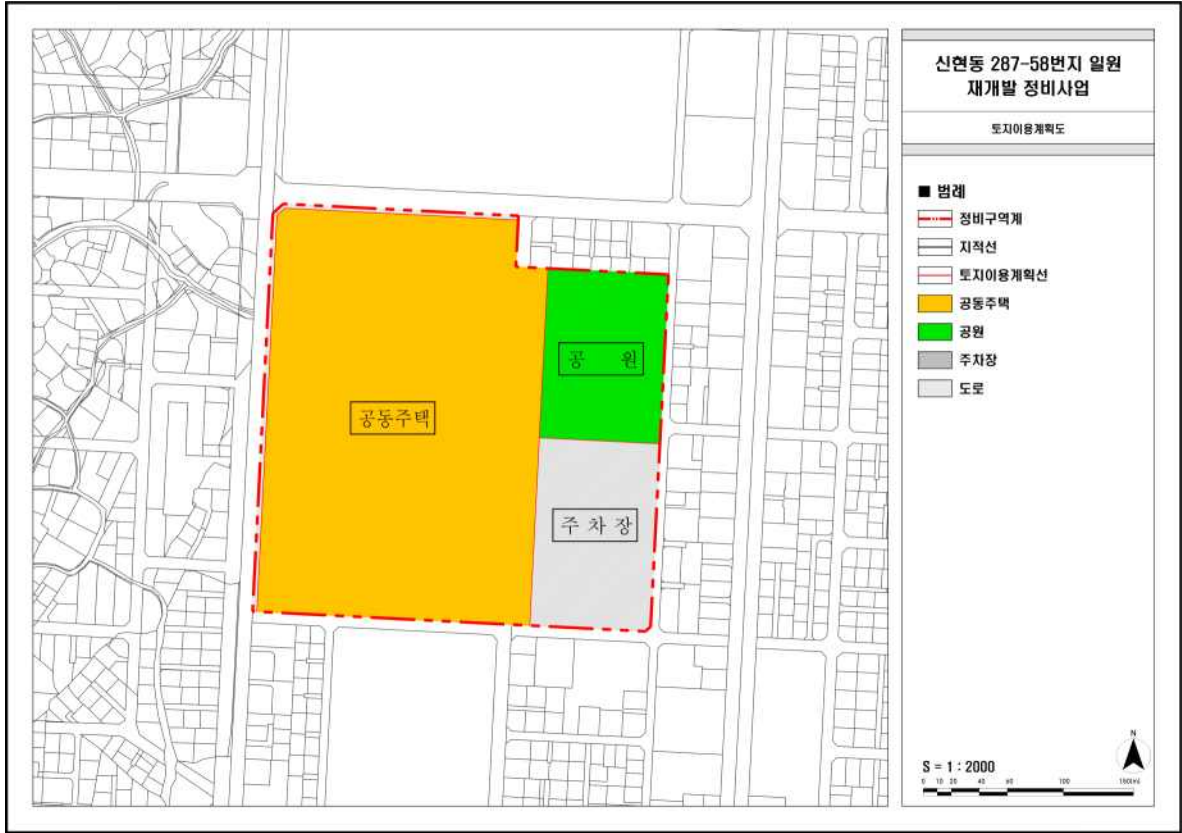
※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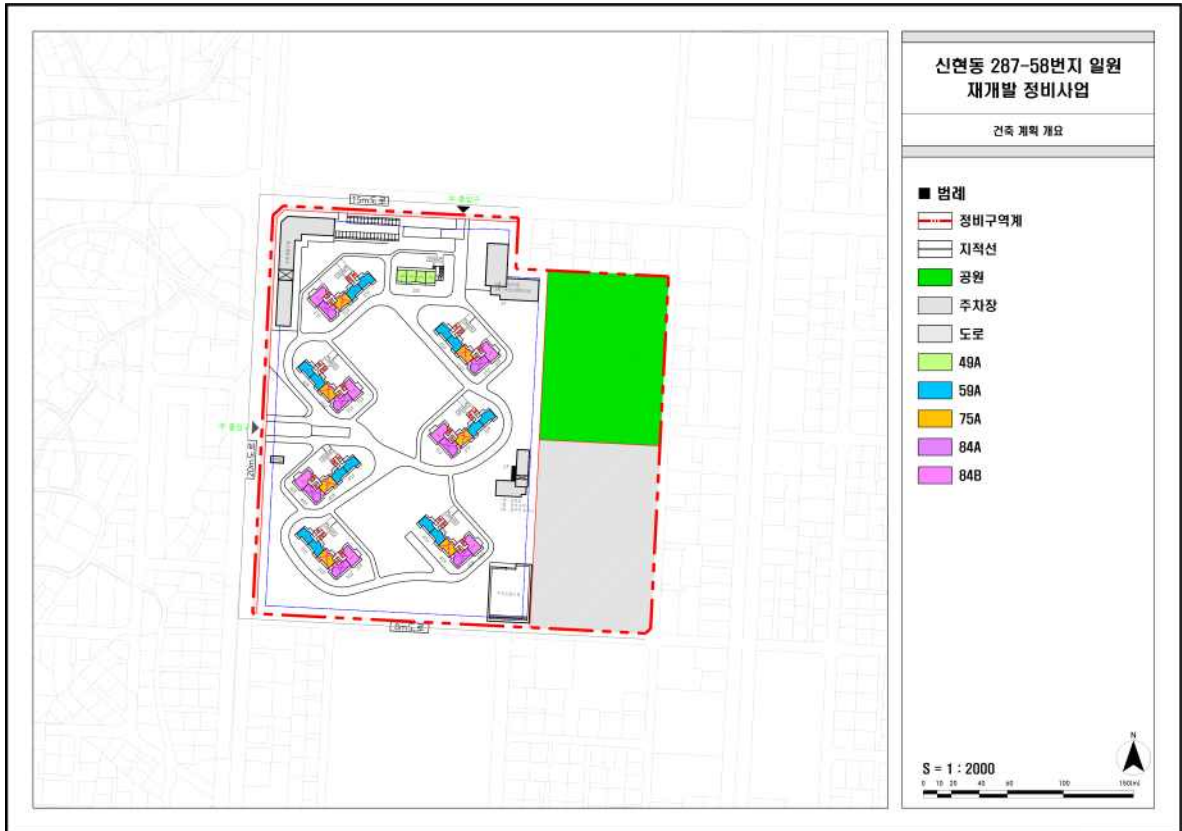
※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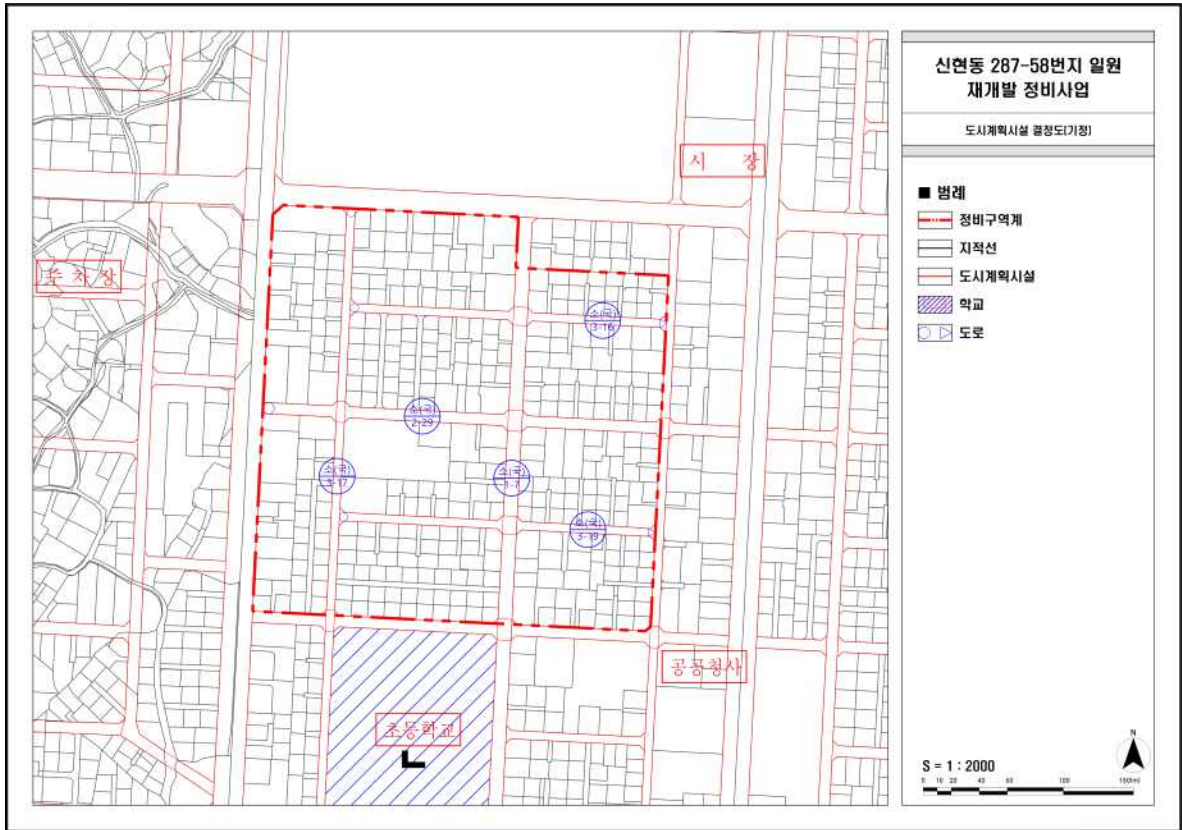
※ 토지이용계획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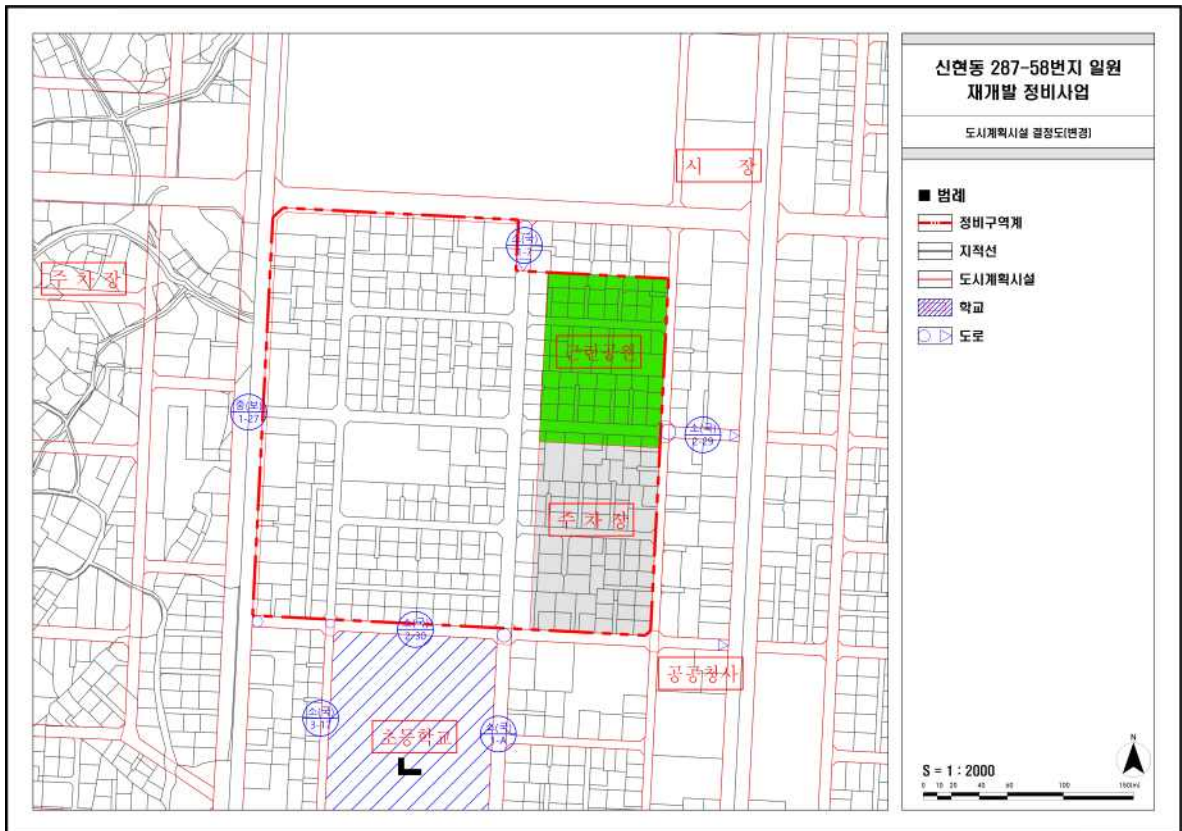
※ 건축배치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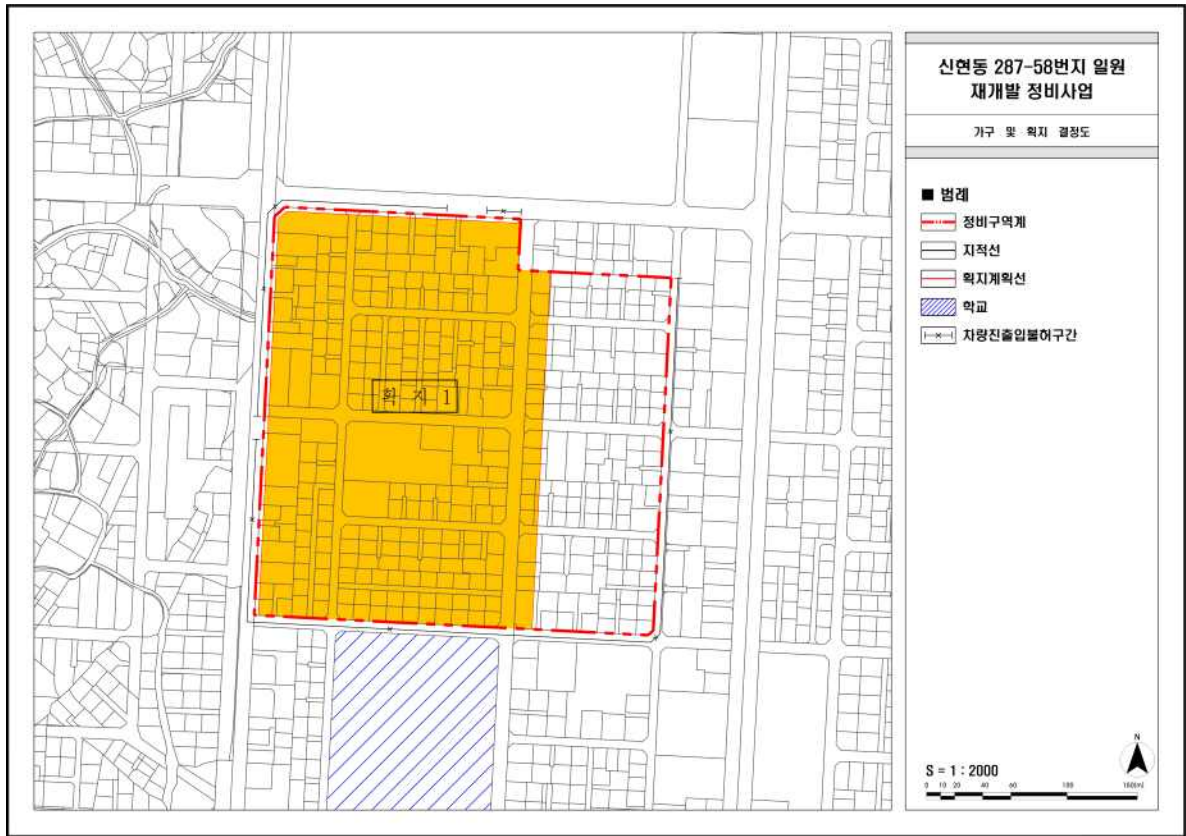
※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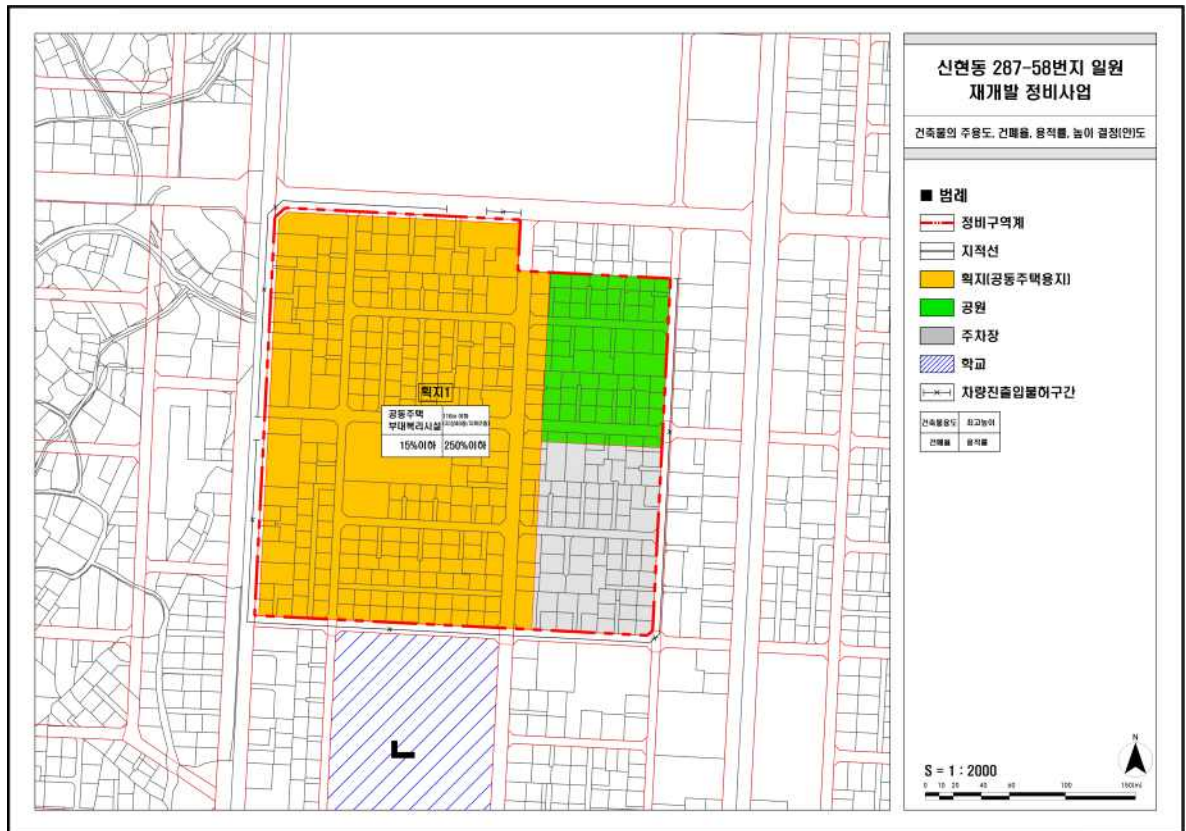
※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(안)



※ 가구 및 획지 규모에 관한 결정(안)도



※ 건축물에 관한 결정(안)도



6. 관계서류 : 공람장소 비치

붙임 공람·공고 주민 의견서 1부. 끝.

신현동 287-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

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·공고 주민 의견서

| | | | |
|---------|--|------|--|
| 성명 | | 전화번호 | |
| 주소 | | | |
| [의견 내용] | | | |
| | | | |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-622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공고기간: 2026. 3. 9. ~ 2026. 3. 24.(16일간)
- 공고내용

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|
| 1. 행정처분 제목 |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| | | |
| 2. 대상차량 | 등록번호 | 89어5065 등 6건(붙임 참조) | | |
| | 차명 | | | |
| 3. 운행정지사유 | 소유자의 요청 등 | | | |
| 4. 법적근거 |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| | | |
| 5. 관할관청 | 기관명 | 인천광역시 서구청 | 담당부서 | 차량민원과 |
| | 주소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4, FAX 032-560-2793) | | |

○ 유의사항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(해제)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.

나.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(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)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또한 같은 법 제81조(벌칙) 및 제82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(말소등록)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문의처: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4)

○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| 연번 | 자동차등록번호 | 차명 | 소유자명 |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| 89어5065 | 포터 II 내장탑차 (PORTER II) | 김*희 | 2026.02.25 |
| 2 | 145가2527 | G80 | 최*호 | 2026.02.22 |
| 3 | 149더2551 | Mercedes-Benz E350 4MATIC | 하*****) | 2026.02.13 |
| 4 | 149오6498 | Mercedes-Benz E350 4MATIC | 하*****) | 2026.02.13 |
| 5 | 59어6270 | 쏘나타(SONATA) | 강*영 | 2026.02.10 |
| 6 | 227러7600 | SM3 | J***** ***G | 2026.02.03 |